

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 25일	
신청인	업체명		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(사무소 소재지)			전화번호/팩스	
	대표자 성명			전자우편	
신청 대상	자율운항선박	선박명칭		기자재	명칭
		선종			역할
		총 톤수 톤			제원
		크기(길이/폭/깊이)			수량
시범운항 및 실증 계획		시범운항 및 실증 기간			
		시범운항 및 실증하려는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			
현장 검사 희망일 및 수행장소					

「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를 신청합니다.

신청인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 또는
안전성 평가 대행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원리·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성능을 설명하는 서류 3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	수수료: 「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
------	---	--

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- 선종란에는 선박원부(船舶原簿)에 기재된 선박의 종류를 기재하고, 선박원부에 등록할 예정인 경우에는 등록 예정인 선박의 종류를 기재하고, 선박의 종류 뒤에 ‘(예정)’을 기입합니다.
- 기자재란에는 「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운항시스템의 명칭, 역할, 제원 및 수량을 기입합니다.

처리 절차

신청서 작성



접수



심사·평가



결재



발급

신청인



해양수산부

현장검사

해양수산부,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